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(전홍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888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7.

발의의원 : 전홍배 의원,
김명화 의원, 권주연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2. 주요내용

출석요구사유	일 시	출 석 대 상 자
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	2026. 10. 20.(화) 10:00	■ 군수 ■ 부군수 ■ 기획전략국장, 행정국장, 경제환경국장, 주민복지국장, 건설도시국장, 문화관광국장 ■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

3. 관련 규정

○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

○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

참고 **상위 및 관계 법령(발췌)**

□ 지방자치법 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(군수 등의 출석요구)

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하여야 하며,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